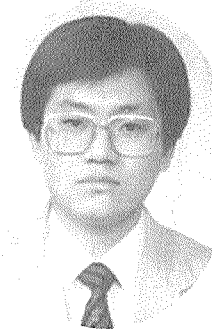


석유산업 자유화에 따른 석유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변 종 립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 서기관〉

1. 석유산업 자유화의 원년

'95. 9월 확정된 석유산업 자유화계획에 따라 드디어 금년부터 석유산업 자유화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금년에 석유가격과 석유수출입이 자유화되었고, 석유 판매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99년부터는 석유정제업의 신규진입 자유화와 함께 석유정제업과 주유소업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석유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필수전략물자로서 그간 정부가 석유산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국내 석유산업이 세계 제6위의 정제능력 보유국으로 성장하고 국내외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경쟁을 통한 석유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석유산업 자유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석유산업 자유화를 기본배경으로 하여 석유사업법이 '95년 12월 이미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관계부처 협의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지난 해 12월 전면 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본고에서는 석유산업 자유화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의 변화 내용을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석유사업자의 등록요건 설정

이번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우선 현행 허가제 또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석유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의 등록 요건으로서 저장시설 등의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기존 허가요건으로서 신규 정제시설이 국내 석유 수요의 130% 이내,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하, 정제능력의 60일분 이상의 저장시설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등록제하에서는 일정 석유정제시설을 보유하고 내수 판매량의 60일분 및 생산량의 45일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석유수출입업자는 현재 전년도 석유 수입량의 45일분 저장시설을 매년 신고하고 원유도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 원유도입 승인제를 폐지하고 석유수출입업 등록은 내수 판매량의 6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어 사업 개시전 한번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국내 석유시장이 자유화되면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는 제1차 공급자로서 상호 경쟁적 위치에 서게 되므로 저장시설 기준을 내수 판매량 60일분 기준으로 일원화 하되,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내수 판매량의 60일 기준만 부여하면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제업자는 타정제업자 보다 적은 저장시설 부담을 지게 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수출이 총판매량의 25% 수준을 넘는 경우는 생산량의 45일분 저장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저장시설 기준을 내수 판매량 기준으로 전환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며, 수출을 포함한 총판매량중 내수와 수출의 비율이 75대25일 때 내수 판매량 60일분과 생산량 45일분의 저장시설 규모가 일치하게 된다.

석유판매업자중 일반대리점의 경우 과거에는 수도권지역은 1,000kl 이상 저장시설 및 100kl 이상 수송장비, 수도권 이외 지역은 700kl 이상 저장시설 및 50kl 이상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던 것을 700kl 이상, 50kl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일원화하였다. 이렇게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은 석유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대리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규 진입을 보다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유소는 허가제하에서의 저장시설 기준을 등록제하에서도 동일 수

준으로 계속 유지토록 하였다.

나. 석유 비축제도의 개선

'95. 12월 개정된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비상시에 대비한 민간 석유비축을 활성화하고 석유비축 의무자의 비축물량 확보 및 저장시설 확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석유비축 대행업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석유비축 대행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대행시 저장시설 1만kl, 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시설 3천톤을 규정하였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1만kl 저장시설은 일반대리점 평균 저장시설의 약 5배 수준이며, 석유가스의 3천톤 저장시설은 일반 ball tank(1천톤)의 3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석유비축 대행업자의 최소한의 저장시설 요건은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민간비축의무 한도량을 내수 판매량의 30일분 이상에서 60일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동한도량 범위내에서 매년 민간 석유비축 의무량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점진적으로 민간비축 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다 석유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질서 저해행위 규정

석유산업 자유화 정책방향에 맞추어 기존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로 이어지는 3단계 석유유통 경로를 자율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석유유통구조 자율화는 당초 석유산업 자유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사항으로서 금년부터 석유가격·수출입 등과 함께 자율화 하는 경우 그간 정책예시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98. 1. 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 문제는 입법예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업계로부터 찬반양론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일부 타정부 부처에서도 시행시기에 관하여 이견이 있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석유산업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일대 변화하는 과정에서 석유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자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간의 정책예시기간을 두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석유판매업 수요에 부응하여 선박용 연료판매업, 재생석유제품판매업 등 특수판매소를 통상산업부장관의 고시형태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석유산업 자유화 실시와 함께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과열·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에서 위임한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로서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석유제품 공급행위, 제품가격을 과도하게 인상 또는 인하하여 공급함으로써 석유 수급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자금 지원을 하는 행위, 석유제품 품질의 과대광고·선전행위 등을 신설하였다.

라. 석유 품질관리제도의 보완

개정 석유사업법상 정제업자·수출입업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을 공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휘발유·등유·경유에 대한 품질규격을 2개 이상 일간지에 공시케 하고 공시 품질규격을 위반한 경우 통상산업부 장관이 위반업소·내용 등에 대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석유사업법은 유사휘발유 제품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만을 하게 하고 과징금 처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민원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패소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사휘발유 적발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경우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에 따른 제재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다만, 불량·저급 휘발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범위반 행위에 비해 유사휘발유에 대한 과징금액을 높게 책정하였다.

또한, 내년부터 석유가격 자유화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를 현행 정올제에서 정액제로 전환하여 휘발유, 등·경유, 중유의 경우 종전 1당 세전 공장도가격의 0.09%내에서 고시하던 것을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1당 0.2원의 범위내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현재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환경규제강화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석유제품 품질 기준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마. 석유 부과금제도의 개선

현재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원유나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부과금(1.7\$/배럴)에 있어 윤활유·아스팔트와 같은 소량다품종 석유제품은 수입부과금 징수의 실적이 거의 없고 업계 불편과 행정절차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일정미만의 소량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

그리고 저유황 중유 및 LNG를 일반전기사업자(한전)에 공급하는 경우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 시행령에서는 LPG와 LNG와의 형평성, LPG의 신규수요 창출, 한전이외의 민자 발전사업자 등을 고려하여 LPG를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바. 기타사항

그 밖의 주요개정 사항으로서 석유수출입업의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자기사용 목적으로 10만kl 이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정수량 미만으로서 10 l 이하의 용기에 포장된 석유제품의 수출입을 하는 경우, 윤활유·윤활기유 및 아스팔트 수출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을 면제토록 하였다.

개정 석유사업법에서는 일정 기간내에 저장시설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해당 석유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등록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 조건부 등록의 기간으로서 석유 정제업자 3년,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비축 대행업자 2년, 석유판매업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기준 상한액이 과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석유사업자별·위반행위별 과징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등 등록요건 미달시에는 저장시설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건설비의 금융이자 비용을 적용토록 하여 과징금 처분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끝으로 석유사업자의 각종 정기보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관련협회에 위탁하여 국내 석유의 생산·수출입·판매·비축현황 등 각종 수급통계의 종합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위탁된 업무 처리결과를 통상산업부에 보고토록 규정하였다.

3. 맺는말

그동안 석유산업 자유화에 대하여 우려와 회의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마침내 금년부터 석유가격을 비롯한 석유산업 자유화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제 우리 석유산업은 일대 전환기적 시점에 서서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석유산업 자유화라는 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용 및 자원손실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무쪼록 우리 석유산업이 자유화·개방화에 임하는 자세와 인식을 새롭게 하여 경쟁의 논리를 체득하고 석유업계의 체질강화를 도모함으로써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㉔

생활과학

산성눈이란 무엇인가

산성눈은 석유나 석탄이 연소될때 나오는 이산화황과 자동차, 공장 등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 및 질산화물이 공기중의 수증기와 응결돼 만들어진다.

산성눈의 산성도는 pH(수소이온농도)가 중성인 7보다 낮을수록 강한 산성이 된다. 대기가 오염돼 있지 않아도 공기중의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내리면서 pH5.6의 약산성을 띠는 데 pH5.6이하의 비와 눈을 산성비나 산성눈이라고 한다. 몇해전부터 pH4의 強(강)산성눈이 내리고 있어 생태계의 또다른 파괴요인으로 떠올랐다.

눈의 산성도는 눈이 내리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갓 내리기 시작한 눈에는 나중에 내리는 눈에 비해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산성눈은 교량 건축물 등에 녹을 일으켜 이를 부식시키고 사람의 머리에 닿으면 탈모를 촉진하는 악영향을 끼친다. 산성눈을 맞았을 때는 알칼리성비누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특히 몸의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눈이 내리는 곳에서 1시간이상 놀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